

##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

제정 2000. 12. 29 규칙 제253호  
개정 2005. 10. 5 규칙 제423호  
2007. 4. 6 규칙 제535호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4. 6>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원감축”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.
2. “인건비”라 함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·연봉·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. <개정 2005. 10. 5>
3. “경상적경비”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·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.
4. “주요사업비”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.
5. “세입”이라 함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기타 다른 법령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·「지방공무원 수당규정」, 기타 지방공무원 보수 관계법령을 제외한다)에 의하여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2장 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<개정 2005. 10. 5>

제4조(기능)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7. 4. 6>

1.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
2.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
3.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
4.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
5.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
6.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·국장이 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4. 6>

②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,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1. 용인시에 사무소를 두고,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<개정 2005. 10. 5>
2. 도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
3.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
4.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
제6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,

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·과장이 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며,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자체심사위원회) ① 「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4. 6>

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·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·과장이 되며,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보조·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
2.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며,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

호서식에 의한다.

###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및 심사·지급

제11조(심사의 신청) ①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시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, 이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중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예산성과금의 심사) 위원회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성과금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3조(예산성과금의 지급)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퇴직·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)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.

## 제4장 사후조치

제15조(예산의 감액조치) 시장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4. 6>

1.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
2.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
3.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

제16조(우수사례집의 발간)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집(이하 “우수사례집”이라 한다)을 발간·배포할 수 있다.

제17조(우수사례집의 활용)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23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4. 6 규칙 제53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05. 10. 5, 2007. 4. 6>

위 축 장

(주소)

(성명)

귀하를 「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5조 규정에 의거  
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 (직인)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05. 10. 5>

## 회 의 록

년도 제 회 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· 자체심사위원회 회의			
회의개시일시	년 월 일( )	장소	
위원참석현황	재적위원       명, 참석위원       명, 불참위원       명		
주요안건			
회 의 내 용			

[별지 제3호서식]

### 지출절약·수입증대계획서

(    년도)

(소관부서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

제 목 (사업명)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 및 추진실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목표책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대효과</p>	